

제211회 거창군의회 정례회
제2차 본회의(2015. 7. 6)

규칙안 심사보고서

운영위원회

거창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 : 2015. 6. 19.
- 나. 발 의 자 : 이성복 의원 외 10명
- 다. 회부일자 : 2015. 6. 19.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15. 7. 2.

2. 개정이유

- 거창군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표기되어 있는 한자 “議” 자를 한글인 “의회” 로 변경하여 우리민족의 자랑스러운 문자인 한글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한글의 위상을 제고하고,
- 용어 순화와 규칙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·개선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의회기 및 배지 한자 도안을 한글로 변경 (안 제3조)
 - “議” → “의회”
- 나. 일본어식 용어 순화 및 배지 이면의 번호 조각 삭제 (안 제5,7조)

4. 전문의원 검토보고 요지

- 이 개정 규칙안은 거창군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표기되어 있는 한자“議”자를 한글인“의회”로 변경하여 우리민족의

자랑스러운 문자인 한글의 자긍심 고취와 한글의 위상을 제고하고 용어 순화와 규칙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·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

- 일반적인 규칙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, 상위 법령에는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6. 토론요지 : 해당없음

7. 수정안 요지 : 해당없음

8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9. 소수의견 요지 : 해당없음

10. 기타 필요한 사항 : 해당없음